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93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팔마

담당변호사 김형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자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964,569,735원 및 그 중 359,166,445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545,403,2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9. 2. 24.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C(D생), E(F생)을 두고 생활하다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호협2667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7. 9. 6. 협의이혼하였다. 이 때 원고와 피고는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다.

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3.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16년 제489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1. 피고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H아파트 I호, 성남시 J아파트, K 등 기타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포기한다.

2. 공동소유의 H아파트 I호 물건은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원고 단독 소유권으로 변경하며, 피고는 1년에 1억씩 매년 6월, 12월에 각 5000만원씩 총 4년간 4억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한다.(2017년 6월부터 4년간 8회)

3. 피고는 H아파트 I호의 수리비 8000만원을 원고에게 201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4. 차량 BMW 640D 1929는 리스기간 만료이후 원고 명의로 이전한다. 이후 추가 차량이 필요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을 제공한다.

5. 피고의 빚, 파산에 대한 책임, 의무는 원고, C, E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

1. 피고는 C, E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매월 1천만원을 매달 30일 원고에게 2016년 12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이러한 양육비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한다.

2. 악기구입비(첼로, 클라리넷 등), 치아 교정비(6백만원), 연수비, 휴가비(매년 800만원씩 각 5월 10월 2회, 2033년까지), 교육비 등 추가적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3. 피고는 C, E의 대학, 대학원 학자금, 유학비용 및 체류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4. 향후 위 약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피고 본인의 수입, 자산의 50%를 하회할 경우, 피고 수익의 절반을 C, E을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다.

[위자료에 관한 사항]

피고는 외도로 인한 결혼파탄의 원인제공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한다.

2) 이후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호협2667호 협의이혼 절차에서 2017. 6. 15. “피고가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0원을 매월 28일에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따라 ㉠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 ㉡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피담보채무 변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359,166,445원(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위 합의서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2.항의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 미지급 주택 수리비 60,000,000원(약정 주택수리비 80,000,000원-원고가 받은 주택 수리비 20,000,000원, 제3항)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따라 ㉣ 2021. 3월부터 2023. 2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58,000,000원,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휴가비 64,000,000원, ㉥ 교육비 23,403,2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 위자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금 359,166,445원 청구, 미지급 주택 수리비 6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거쳐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중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도 서울 강남구 K 4층 다세대주택 중 2/10 지분,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35평형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가액으로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에게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과 ‘L’ 같은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사업 관련 재산만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유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하는 시점에 이전할 뿐 아니라 그 담보대출 전액을 상환하고 거액의 수리비(실제로 수리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알 수 없음)까지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의 채무는 피고 혼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 ②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K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은 혼인기간 중인 2012. 10.경 상속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이지만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외도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피고는 무리한 양육비(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음에도 재산을 포기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지급기간이나 내역이 일반적인 양육비의 상례를 벗어나고 금액도 확정하기 어려우며,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양육비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향후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준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음)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압박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나. 미지급 양육비 158,000,000원, 휴가비 64,000,000원, 교육비 23,403,290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속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부분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양육비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중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휴가비와 같이 양육비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사사건으로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란 기재와 같이 2016. 12월부터 2033. 12월까지 매월 10,000,000원을 C, E에 대한 양육비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2033년까지 매년 5월, 10월마다 800만원씩의 휴가비와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21. 2월까지의 약정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나 2021. 3월부터 2022. 4월까지 24개월 동안의 양육비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일부인 82,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8월부터 2021. 11월까지 C, E에 대한 교육비로 총 22,583,000원¹⁾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4,583,000원[= 2021. 3월부터 2023. 2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58,000,000원{=약정 양육비 240,000,000원(=24개월×10,000,000원) - 기지급 양육비 82,000,000원}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휴가비 64,000,000원(=8회×8,000,000원) + 교육비 22,58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양육비에 관한 최종 합의를 거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육비에 관한 종전 합의인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들에게 작성하도록 안내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서식의 양육비 지급액란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_____원”이라고 부동문자로 적혀 있고, 법원이 위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에 따라 협의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한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3호 제9조 및 [제3호 서식] 참조),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과 모순되거나 배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양육비부담조서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만 적는 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명목의 돈이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피고로서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부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가정법원에 그 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양육비에 관한 최종 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30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서의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의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합의서에 근거한 피고의 위자료 명목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자신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압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피고도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의 위자료는 통상의 경우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고, 당시에 원고에게 충분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재산분할을 포기하여 부양적 요소가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의 나이나 사회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받아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합의 당시 피고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4,583,000원[= 2021. 3월부터 2023. 2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58,000,000원 +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휴가비 64,000,000원 + 2021. 11월까지의 교육비 22,583,000원 + 위자료 명목의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김광식 병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홍자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H아파트 1호

[도로명주소] 성남시 분당구 N, 1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공동주택(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23505.71㎡

지하1층 18649.08㎡

1층 5909.71㎡

2층 6681.39㎡

3층 7317.59㎡

4층 7317.59㎡

5층 6131.02㎡

6층 6131.02㎡

7층 6131.02㎡

8층 6131.02㎡

9층 6131.02㎡

10층 6131.02㎡

11층 6131.02㎡

12층 6131.02㎡

13층 6131.02㎡

14층 6131.02㎡

15층 6131.02㎡

16층 6131.02㎡

17층 6131.02㎡

18층 3509.09㎡

19층 3509.09㎡

20층 3509.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M 대 31677.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147.5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1677.7분의 48.21. 끝.

1)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교육비로 총 23,403,290원(2020. 11. 16. E에 대한 수학과외비 1,320,290원 포함)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1. 16. E에 대한 수학과외비로 지출한 돈은 500,000원이다(그 당시의 원고 계좌 잔액이 1,320,290원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비 청구 중 820,290원(=1,320,290원-500,000원)은 이유 없고, 나머지 22,583,000원(=23,403,290원-820,290원)만 인정한다.